

서울특별시의회
제298회 정례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1968호)

제안설명



2020. 12. 18.

서울특별시 의원 이 경 선
(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)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이경선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

구역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범위를

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시 여건 상

역세권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,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